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-10호

#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23조제1항 후단 중 “한도는”을 “한도 및 계산방식은”으로 한다.

제6편의2에 제6-34조 및 제6-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-34조(유상증자 참여 예외) ①영 제208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”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의 거래를 말한다.

② 영 제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법 제392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
2. 동일한 법인 내에서 영 제208조의4제1항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

제6-35조(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) 영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
1.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영 제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·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
2.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차거래정보를

2080222 /2021-04-05 13:4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할 것

3.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영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통해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할 것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2080222 /2021-04-05 13:4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4-23조(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(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,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. | 제4-23조(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) ①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 한도 및 계산방식은 ------<br>----------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제6-34조(유상증자 참여 예외) ① 영 제208조의4제2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”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의 거래를 말한다.<br>② 영 제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 |



2080222 /2021-04-05 13:4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| | |
|---|---|
| | 한다.<br>1. 법 제392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<br>2. 동일한 법인 내에서 영 제208조의4제1항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<br>제6-35조(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) 영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.<br>1.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영 제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·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<br>2.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|



2080222 /2021-04-05 13:4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

| | |
|---|---|
| |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차거래정보를 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할 것<br>3.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영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|



2080222 /2021-04-05 13:41/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.